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7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강석주 의원(1명)
찬 성 자: 김경훈,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신복자,
오금란, 유만희, 유정인,
이성배, 이종환, 임춘대,
채수지, 홍국표 의원(23
명)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적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함.
- 특히, 서울특별시 및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개설 전 필수교육 제도를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절차에 공식 반영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함.
- 이에 국회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의 사전심사와 등록심사 권한을 관련 의약단체에 위임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호사협회 등록제와 같은 자율 규제 시스템을 의료 분야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약사법의 개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한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6.92%에 불과한 실정임.
- 불법 개설 수단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고, 수사기관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폐업 및 재산은닉으로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따라, 사후 단속 중심 대응은 한계가 명확하며, 사전심의 제도와 아울러 실효성 있는 개설 자격 검증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임.
-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4항 개정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시·도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무분별한 병상증가 억제를 위한 제도적 진전임.
- 그러나 병상 수급 외에도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과 적정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보완 제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의약단체 주관의 사전 교육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함.
-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를 통한 등록제도를 통해 자격 및 사무소 개설이 통제되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또한 의약단체의 등록 및 심사 참여기능을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불법 개설 방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호, 국민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서울시와 국회,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개설 전 교육제도 도입과 의약단체를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등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 서울시 25개 구청장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4년 5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1771개소가 적발되었고,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이르렀으나 실제 환수율은 6.92%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며, 최근 9월에 발표된 자료에서도 불법 의료기관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 그 수법은 갈수록 더 복잡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업이나 재산 은닉 등을 통한 환수 회피가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심화시키고 있다. 불법 개설 방식은 날로 지능화되는 반면, 수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평균 수사 기간은 1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사후 단속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단속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개설 초기부터 불법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예정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제도는 병상 수급 관리를 위한 긍정적 조치이지만, 대다수 병원인 의원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의약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필수 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개설 희망자가 의료법령, 불법 개설의 법적 책임, 지역 보건의료 체계 등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은 지역 의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단체가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법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를 살펴보면, 법률사무소 개설시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증명서 확인 등 관련 개설 요건의 절차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도 의약단체에서 등록·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자격과 책임성을 함께 검토하는 공공-민간 협업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개설 전 필수 교육 이수와 등록심사 단계에서 의약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하며,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각 자치구는 개설 승인 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병상 수급과 지역 의료 수요를 반영한 책임 있는 승인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의료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들의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 및 약국 개설 전 필수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의약단체에 등록 심사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25개 자치구 및 의약단체와 협력하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승인 시 의약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5.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